



제 6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

6.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

제 6 장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

6.1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

대상 구조물의 종합평가는 『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(국토교통부 2010. 12.)』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였다.

바닥판하면에 발생한 백태, 보수부 들뜸, 탈락손상이 기 점검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포장부의 방수층 파손에 의한 노면수 유입이 원인일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, 바닥판하면 표면보수는 교면방수를 선 시행 후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

거더에 피복두께부족으로 철근노출이 조사되었으며, 노출된 철근의 녹제거 및 방청 후 단면보수를 실시하여 피복두께를 확보하는 보수가 필요하다.

이천교(30)의 상태평가는 “B”로 평가되었으며, 본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, 안전등급은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“B(양호)등급”으로 평가되었다.

【표 6.1】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결과

평가구분	결합지수	평가결과	비 고
상태평가	F = 0.228	B	
안전성평가	-	-	
종합평가	안전등급 : B 등급(양호)		
평 가	· 외관조사 결과, 주요 손상으로는 바닥판하면의 백태와 보수부 들뜸 및 탈락, 거더 철근노출, 교대, 교각 균열, 철근노출 등이 확인되었으며, 구조적인 손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· 내구성조사 결과, 콘크리트 강도, 탄산화시험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· 상태평가 및 내구성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, 안전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,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,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“B등급(양호)”지정됨		

※본 용역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음.

